

# 서 울 고 등 법 원

## 춘천제1민사부

### 판 결

사 건 (춘천)2019나50401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도희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19. 선고 2017가합6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22.

판 결 선 고 2019. 6. 5.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6~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칙 제9조, 제15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줄~5쪽 1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피고의 회칙 제9조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입회한 자는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이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는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회원자격을 새로이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직까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D, G으로부터 양수한 회원권에 관하여 2016. 8. 30. 원고 A 명의의, 2016. 10. 31. 원고 B 명의의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피고는 임의로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회원자격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 양수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되어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D와 G의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회원자격을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6쪽 1줄, 21줄, 8쪽 9줄의 '제15조'를 '제16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15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반납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런데 회원권은 권리일 뿐 반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표상하는 회원증을 피고에게 반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위 항변을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하는 회원이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회칙 제16조 제2항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명의의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신청의 첨부서류로 양도인의 회원증 또는 회원증분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D, G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위 양도인들로부터 회원증분실신고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D, G 명의의 회원증을 피고에게 반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10쪽 9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들로부터 회원증을 반납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민법 제536조에서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는 입회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회원으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와 그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원증이 반납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회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이건희

                  판사            조재현